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4. 10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4. 10
- 다. 상 정 일 자 : 97. 4. 17(제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 안 자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나. 제안사유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화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결정사항을 재정비하고 일부조문의 자구수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4. 다른 조례, 규칙등에서 군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사항
5.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병항)

- 본 조례 개정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동 위원회 결정사항 정비와 자구수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조례로서 전남도의 시군공통 검토안에 의거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21
----------	---------

제출년월일 : 1997. 3. 31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결정사항을 재정비하고 일부조문의 자구수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사항중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4. 다른 조례. 규칙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중 "종료함으로서 해체한다"를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장은 안전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4. 다른 조례, 규칙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제3항중 "제출한"을 "제출할"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전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동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중 "간사장"을 "간사"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6조 제목 "간사장"을 "간사와서기"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간사장 1인 및 간사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를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 업무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구성)</p> <p>①~③ (생략)</p> <p>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u>종료함</u>으로서 해체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조 (구성)</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u>종료함</u>으로써 <u>해촉된다.</u></p> <p>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당연직</u> <u>위원의</u> <u>참석범위를</u>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u>관계공무원</u> 또는 <u>군수가</u>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u>참석시킬</u> 수 있다.</p>
<p>제3조 (결정사항) <u>군정조정위원회는</u>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p> <p>1. <u>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u> <u>수립</u></p> <p>2. <u>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u> <u>검토시행</u></p>	<p>제3조 (결정사항) <u>군정조정위원회는</u>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p> <p>1. <u>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u> <u>수립</u></p> <p>2. <u>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u> <u>의 검토시행</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3. <u>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u></p> <p>4. <u>삭제</u></p> <p>5. <u>삭제</u></p> <p>6. ~35. (생략)</p> <p>제4조 (회의)</p> <p>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에 <u>제출한</u>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u>간사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u>전항</u>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u>간사장</u>은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p>	<p>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 <u>서</u>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p> <p>4. 다른 조례, 규칙등에서 군정조정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u>사항</u></p> <p>5.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u>심</u>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사항</u></p> <p>제4조 (회의)</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출할</u> <u>간사</u></p> <p>④ <u>제3항</u> <u>간사</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야 한다.</p> <p>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 며 <u>가부같은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u></p> <p>⑥~⑦ (생 략)</p> <p>제6조 (간사장)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u>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 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u></p> <p>②간사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u>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u></p> <p>③간사와 서기는 <u>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 장을 보좌한다.</u></p>	<p>.....</p> <p>⑤..... <u>결정 한다.</u></p> <p>⑥~⑦ (현행과 같음)</p> <p>제6조 (간사와 서기) ①..... <u>간사와 서기 각 1인 을 둔다.</u></p> <p>②간사는 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u>소속직원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u> <u>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담당자를 간사 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u></p> <p>③간사와 서기는 <u>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u></p>